

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13.6.12] [대통령령 제24540호, 2013.5.22, 일부개정]

중소기업청 (인력개발과) 042-481-4365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5.30, 2011.9.30>

제2조(적용 범위)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 단서에서 "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.

1. 부동산업
2. 일반유희 주점업
3. 무도유희 주점업
4. 기타 주점업
5.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6. 무도장 운영업

[전문개정 2013.5.22]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,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.

④ 삭제 <2008.2.29>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1.31]

제4조(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)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(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. 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등의 장과 협력하여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30, 2007.3.22, 2008.1.31, 2010.7.12>

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의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역별 추진에 관한 사항
2.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3. 지역내 중소기업 관련 시설·장비 및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.

제5조 삭제 <2008.2.29>

제6조(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)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등(이하 "협동조합등"이라 한다), 「산업발전법」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(이하 "사업자단체"라 한다),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학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30, 2008.2.29, 2013.3.23>
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, 사업자단체 등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제7조(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)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·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·관리할 수 있다.

제9조(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)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·포상하는 등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. <개정 2008.12.31>

1.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
2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(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)
3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미취업자

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미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
2. 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소개사업자등에게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

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결과
2.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계획서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미취업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08.1.31]

제9조의3(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의 해소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
 2.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 3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
- ② 중소기업청장은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학교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과 학교는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선정기준,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08.1.31]

제10조(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중소기업 관련기관, 중소기업 등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.31>

-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.5.30, 2010.7.12>
1. 중소기업청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
 2.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
 3.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
 4.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
-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12>

제11조(중소기업체형사업계획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·공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
2.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
3.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하는 학교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
제13조(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>

제14조(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)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「출입국관리법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30>

제15조(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)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·경비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)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②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,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(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)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(이하 "교원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,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0.6.29>

제17조의2(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업체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것
2.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기능 등 지식 전수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3. 현장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·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
4. 현장연수생의 교육·연수 및 취업 촉진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
5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
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3.23>

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

[본조신설 2011.9.30]

제17조의3(인증 취소의 세부절차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,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9.30]

제18조(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) 법 제1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<개정 2008.1.31, 2013.5.22>

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(이하 "인력고도화계획"이라 한다)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
2.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
3.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
4.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춘 것

제19조(협약체결 및 관리)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.31>

1. 사업의 내용
2.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
3. 사업시행의 기대성과

4.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
 5.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
 6.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 삭제 <2008.1.31>

제21조(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) 중소기업청장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5.30, 2007.9.10, 2009.11.20>

제22조 삭제 <2008.1.31>

제23조 삭제 <2008.1.31>

제23조의2(문화생활 지원대상 등)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·기능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,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08.1.31]

제24조(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,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<개정 2006.5.30>

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.<신설 2008.1.31>

④ 우수중소기업의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신설 2008.1.31>

제25조(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
2.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·홍보
3.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

제26조(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30, 2007.9.10, 2009.11.20>

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위한 설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 설비도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6조의2(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지원)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청이 개발한 표준 성과 공유 제도의 무상 보급
 2. 성과 공유 제도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
 3. 그 밖에 성과 공유 제도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08.1.31]

제27조(근로자의 창업지원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2조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30, 2008.1.31>

제27조의2(전문기술·기능인력의 발굴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·기능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
-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근로자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문기술·기능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된 전문기술·기능인력에 대하여 해당 업종별·분야별 전문기술·기능인력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④ 전문기술·기능인력의 추천절차, 선정기준 및 증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08.1.31]

제27조의3(전문기술·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)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·기능인력이 이용 시 우대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우대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전문기술·기능인력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8.1.31]

제28조(주택의 우선분양)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"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. <신설 2006.5.30, 2008.1.31, 2009.4.21, 2009.9.21, 2013.5.22>
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(이하 "주거전용면적"이라 한다)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
 -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
 - 나. 「임대주택법시행령」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
3.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
4.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

-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6.5.30, 2008.1.31>

제29조(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) 법 제33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"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.

제30조(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그 결과를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5.30>

제30조의2(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(이하 "전담조직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2.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3. 전담조직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을 것

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·공급업무의 지원
2.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
3.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
4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

③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전담조직의 시설, 전문인력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08.1.31]

제31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 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30, 2013.5.22>

1.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
2.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에 관한 업무
3.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
4.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
5.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및 지원
- 5의2.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
6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 인증에 관한 업무
7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
8. 법 제20조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관리
9.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업무
10.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,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·확산
11. 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 공유 제도의 개발·보급
12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의 선발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5.22>

[전문개정 2008.1.31]

부칙 <제24540호,2013.5.22>

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